



공정위, 벤처 부당내부거래 제재 ‘벤처 길들이기?’

11개 벤처기업에 과징금 5억 4300만원 부과 ... 관련기업 대부분 반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벤처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지적된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은 17개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억 5200만원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뜻을 보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취재 신중훈 기자

이번에 지적된 벤처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면서 무이자, 저리 또는 이자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했던 것(티보테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솔루션, 오피콤, 삼지전자 등)과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한글과컴퓨터,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또 인터파크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지적됐고 계열회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임대 및 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 물품 납품대금을 지연수령한 사례(한글과컴퓨터, 유비케어, 한국정보공학, 로커스)도 적발됐다.

인터파크 등 강력 반발

하지만 이에 대해 벤처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벤처 길들이기’ 조치의 일환

인 것 같다”며 “지적된 부당지원 유형들의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제공됐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납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굳이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것을 일부러 지적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체별로 살펴보면 인터파크는 지난 99년 BW를 발행하면서 정상가격인 주당 2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원에 발행해 이를 특수관계인인 이기형 인터파크 사장에게 매각해 이 사장이 2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으나 인터파크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파크는 “당시는 인터파크가 코스닥에 상장되기 이전이어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 바로 4일전에 8700원의 금액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추가로 BW를 발행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인수를 기피해 이를 이기형 사장이 인수하게 됐다”며 “오히려 이 사장은 BW를 당시 유상증자 발행가격인 8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BW 발행 이후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 최대주주가 평가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주인수권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대표이사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가 크게 떨어져 평가차익도 대부분 소멸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으나 공정위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는 계열회사인 한소프트네트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2억~40억원의 운영자금을 연리 4.70%~9.25%로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예금 4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고 또 한소프트네트에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약정연체료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면서 낮은 전환율을 적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글과컴퓨터는 이에 대해 “자사 사옥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돼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할인해 줬다”며 “또 임대보증금 지연이자와 연체료의 경우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소프트네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인식 부족 지적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솔루션의 경우 각각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 주면서 정상금리보다 4.01%~4.74% 정도 낮은 금리를 책정했다는 이유로 각각 2800만원과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다음측은 “은행 수신금리인 6% 선에서 자회사에 대출해 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이러한 사항은 그때 그때 공시를 했는데 2년이나 지난 뒤에 이를 문제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정보공학은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저작권과 프로그램소유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계열사인 엠투소프트와 아이릭에게 각각 1억 2300만원과 8500만원 상당액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지적됐다. 또 이 회사는 이들 계열사들이 자사가 임차한 사무실을 낮은 사용료를 받고 사용토록 하고 기타 집기와 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총 2억 7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보공학측은 “엠투소프트와 아이릭 두 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분사기업으로 분사기업은 2년간 지원해도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공정위 규정이 있다”며 “또한 지원유형이 무체재산권이고 부동산 사용료에서도 실제 지원규모는 여타 업체들

에 비해 크지 않은 데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정식공문을 받기 전이라 뭐라 말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반발에 대해 공정위측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벤처기업들의 경우 아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자신들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들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식공문(의결서)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 심판관리실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별 지원성 거래규모 및 과징금

(단위 : 백만원)

	벤처기업(지원업체)	수혜업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
1	한글과컴퓨터	한소프트네트	4,417	228	90
2	터보테크	넥스트인스트루먼트	873	13	5
3	유비케어(구 메디다스)	미디어엠 닥터헬프 페이지원	1,336	81	31
4	로커스	로커스네트웍스	452	25	17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싸이더스 예전미디어	5,450	96	66
5	다음커뮤니케이션	투어익스프레스	1,714	41	28
	다음솔루션	다음커뮤니케이션 투어익스프레스	6,760	145	73
6	오피콤	텔트로닉스	1,913	192	76
7	인터파크	이기형(인터파크 대표이사)	2,500	2,500	27
8	한국정보공학	엠투소프트 아이릭	502	274	109
9	삼지전자	SJ일렉콤	1,585	57	21
		라미오 아이비에스넷			
합 계			27,501	3,652	543

※ 공정위는 인터파크의 산출과징금이 17억 5000만원이나 법상 과징금상한선(2000. 4. 1. 이전은 과징금부과매출액의 2%, 이후는 5%, 공정거래법 제24조2)이 2700만원이므로 27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없었다고 밝힌.